# 2017년 9월 순자본비율

(단위:백만원)

| 구분 | 2017년 9월 (당기 2분기) | 2017년 3월 (전기) | 증감 |
|---|---|---|---|
| 1. 영업용순자본 (A) | 85,456 | 71,572 | 13,883 |
| 2. 총 위 험 (B) | 11,839 | 14,453 | -2,614 |
| 3. 필요유지자기자본 (C) | 28,000 | 28,000 | 0 |
| 4. 순자본비율 {(A-B)/C} | 262.9% | 204.0% | 58.9% |
| 5. 순자본 (A-B) | 73,617 | 57,120 | 16,497 |

*2016.1.1부터 순자본비율 적용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장 제1절 제30조(재무건전성 유지)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>